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. 7. 20 선고 2023가단30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7. 6.

판 결 선 고 2023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C 대 42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‘ㄱ’부분 51㎡ 지상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18, 19, 20, 21, 22, 23,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‘ㄴ’부분 34㎡ 지상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경기도 양평군 C 대 423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‘ㄱ’부분 51㎡ 지상에 목조 스투트지붕 단층 주택(이하 ‘이 사건 1주택’이라 한다)이 있고, 같은 도면 표시 18, 19, 20, 21, 22, 23,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‘ㄴ’부분 34㎡ 지상에 목조 스투트지붕 단층 주택(이하 ‘이 사건 2주택’이라 한다)이 있다.

다. 피고는 2018. 8. 8.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1, 2 주택을 매수하여 2018. 8. 21.
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. 9. 27. 소외 E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는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7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1, 2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, 2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1, 2 주택을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준석

토지 소재	광역시
현황 표시	
법령	영역
	건물외벽선(1층)
면적 표시	
지번 번호	면적(㎡)
 ㄱ	51
 ㄴ	34

